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9회 임시회(2020. 6.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58
----------	-------

2020. 6. 1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
- 나. 제 출 일 : 2020. 5. 22.
- 다. 회 부 일 : 2020. 5. 26.

2. 제출이유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 및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신규 설치하는 전자게시대 관련 규정과 수수료 감면대상에 정당현수막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자게시대의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내용 신설(안 제18조제2항)
- 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정당현수막 포함내용 신설(안 제23조제3항제8호)
- 다. 전자게시대 표시 광고물 수수료 신설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 미비점 보완·정비 등
(안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0. 2. 13.~ 2020. 3. 4.(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새로운 광고 매체인 전자게시대를 활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홍보 및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데 전자게시대의 표출 완화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정당활동 보장 차원의 정당 홍보 현수막 수수료 삭제 등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사항 중 신호등과 같은 색깔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규정 신설(안 제18조제2항)
-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설치시 수수료 감면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제8호)
- 전자게시대 표시에 따른 광고물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 및 일부 용어 순화차원의 정비(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5, 안 별표6)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전자게시대의 표출 기준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교통신호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광고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는데,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 등 공공목적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울시 자치구별 설치사례〉

- 또한, 그 동안 정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홍보 등의 현수막 게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의 논쟁이 상존했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법」¹⁾에서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용 지정게시대로 유도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정당 현수막의 게첩 논란 해결 등의 현실성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극적 행정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크기 및 재질 등의 규격과 게시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1) 제37조(활동의 자유)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적극적 방안으로 보임.

- 전자계시대 표출관리 기준의 경우 인근 주민의 전광판 야간 조명에 따른 눈의 피로, 스트레스 등의 민원과 야간 운전시 눈부심으로 인한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²⁾등에 따라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빛 방사 허용기준³⁾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에는 투명성을 확보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전자계시대 설치 후에는 천재지변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전도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자계시대 수수료 산정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금액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한 수수료 인상보다는 좀 더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자계시대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음.
- 기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위법성은 없어 보임.

2)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참 고 자 료]

[별표1.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²)

2.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²)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 ²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 ²

3.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 ²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비고

-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생략)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